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도핑행위·도핑알선행위 처벌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628호)

2025.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전완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도핑행위·도핑알선행위 처벌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조계원의원 등 16인
2. 발 의 일: 2024. 12. 18.
3. 회 부 일: 2024.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핑 방지를 위해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핑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금지 약물 등을 복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로 스포츠 경기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함. 또한, 도핑 물질은 심장마비, 간 손상, 불임 등 선수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도핑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도핑 행위와 도핑 알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도핑을 한 선수와 도핑을 알선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핑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기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및 제49조의2).

Ⅲ. 검토의견

1. 도핑 행위·도핑알선행위 처벌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도핑행위와 도핑알선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도핑을 한 선수와 도핑을 알선했던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제3항 신설 및 제49조의2제3호·제4호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생략) <u><신설></u>	제35조의2(도핑 금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도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수의 치료 목적 및 오인·혼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신설></u>	③ <u>경기단체의 임직원 및 감독·코치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에게 도핑을 알선했하여 도핑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수의 치료 목적 등</u>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u><신설></u> <u><신설></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49조의2(벌칙)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3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도핑을 한 자</u> 4. <u>제3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도핑을 알선하여 도핑을 하게 한 자</u>
--	---

다. 검토의견

-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는 도핑방지를 위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설치·운영, 경기단체·프로스포츠선수의 도핑검사의무, 도핑예방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도핑방지 관련 현행 규정 내용]

법률	도핑방지 관련 주요 조문
국민체육진흥법	○ 도핑 정의(제2조제10호) ○ 국가의 도핑방지 시책 수립, 도핑예방교육·홍보 등(제15조)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사업 및 구성(제35조) -위원장 1명 포함 11명의 위원,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 준용 ○ 경기단체 등록선수의 도핑검사의무(제35조의2)
경륜·경정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등록 경륜·경정선수의 도핑검사의무(제7조의2)
학교체육진흥법	○ 교육부장관·교육감의 학생선수·학교운동지도자 대상 연 1회 이상 도핑방지교육(제12조의2)

- 또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¹⁾는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스포츠 반도핑국제협약」을 바탕으로 「한국도핑방지규정」, 「프로스포츠도핑방지규정」, 「경륜·경정 도핑방지규정」 등을 제정하여 선수들의 도핑 검사 및 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메달·상금 몰수, 자격정지·금지, 재정지원 중단 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²⁾³⁾
- 그런데 도핑행위는 스포츠 경기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동시에 선수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음에도 도핑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1)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연혁 >

04. 10. 1.	「세계도핑방지규약」(WADC) 발효
05. 10. 19.	유네스코 제33차 전체회의,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조약 제1841호) 채택
06. 11. 13.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설립
07. 4. 1.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 발효 (07. 2. 국회 비준)
07. 4. 11.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신설
07. 4. 27.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가입
07. 6. 22.	「한국도핑방지규정」 제정 (07. 12. 19.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인준)
15. 5. 18.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2(선수의 도핑검사) 신설
16. 2. 18.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제정
19. 6. 10.	「경륜·경정 도핑방지규정」 제정

자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2) < 선수 구분에 따른 적용규정·대상 >

선수 구분	적용규정	적용 대상	비고
전문체육	「한국도핑방지규정」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선수	「세계도핑방지규약」(‘04.10.1.)에 따른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제정하여 전세계 유사 기준으로 스포츠 분야 제재(자격정지 등) 부과
프로스포츠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프로스포츠 등록선수 또는 가입 회원	농구, 야구, 배구, 골프의 경우, 「세계도핑방지규약」을 기준으로 하되, 시즌, 단체/개인 종목 등의 경기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스포츠 분야 제재기준 마련*
경륜·경정	「경륜·경정 도핑방지규정」	경주에 출전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등록선수	「세계도핑방지규약」과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참고하되, 자체적으로 제정

*주) 축구는 상급단체(FIFA, KFA)가 「세계도핑방지규약」을 수용하므로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한국도핑방지규정」 적용

자료: 문체부

3) [참고자료2] 도핑행위 및 제재 현황

- 이에 개정안은 치료목적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한 도핑행위 및 도핑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처벌규정을 통해 도핑 및 도핑알선의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 및 올바른 경쟁 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도핑 행위⁴⁾는 선수가 금지약물을 복용하여 운동능력을 강화 시킴으로써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단행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도핑행위의 원인인 ‘경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도핑행위를 상당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인바, 처벌 규정까지 도입하는 것은 금지행위 대비 제재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 또한,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도핑행위에 대한 제재를 형법 등으로 규정하지 않을 것을 권고(도핑방지국제세미나, '22. 9. 27.)하였고, WADA 도핑방지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⁵⁾, 독일의 「도핑방지법」은 도핑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된 처벌 사례가 없고, 미국의 「로드첸코프 반도핑법」 등을 제외하면 도핑행위를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료: 문체부

처벌하는 해외 입법례가 흔치 않다는 점⁶⁾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핑행위 및 도핑알선행위 금지규정은 선언적으로 마련하되, 처벌규정 도입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음.⁷⁾

< The Dos and Don'ts of Developing National Anti-Doping Legislation > 2022. 9. 27. MONTREAL(WEBINAR)	
□ LEGISLATION: PRACTICES TO AVOID	
○ Avoid references to Criminal Law:	
- Provisions relating to criminal law should be included in the relevant criminal legislation and not in anti-doping specific legislation	

6) 자료: 문체부

[참고자료3] 도핑방지 및 처벌 관련 해외 입법례

7)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 (1) ‘오인·혼동 등’ 세계도핑방지규약에서 허용하지 않는 예외사유 삭제,
- (2) 감독·코치·현장트레이너 등을 모두 포괄하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표현 사용
- (3) 알선을 통해 선수에게 도핑을 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알선행위 자체도 금지 등의 측면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개 정 안	문체부 수정안
제35조의2(도핑 금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35조의2(도핑 금지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도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u>다만, 선수의 치료 목적 및 오인·혼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도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u>(단서 삭제)</u>
③ 경기단체의 임직원 및 감독·코치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에게 도핑을 알선하여 도핑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u>다만, 선수의 치료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③ 경기단체의 임직원 및 체육지도자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에게 도핑을 하게 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u>(단서 삭제)</u>

○ 참고로,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및 각 경기 단체가 도핑방지규정을 제정하여 제재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 처벌규정 도입 시 법적 분쟁의 지연으로 자체 징계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 WADA 규약과의 상충되는 측면 존재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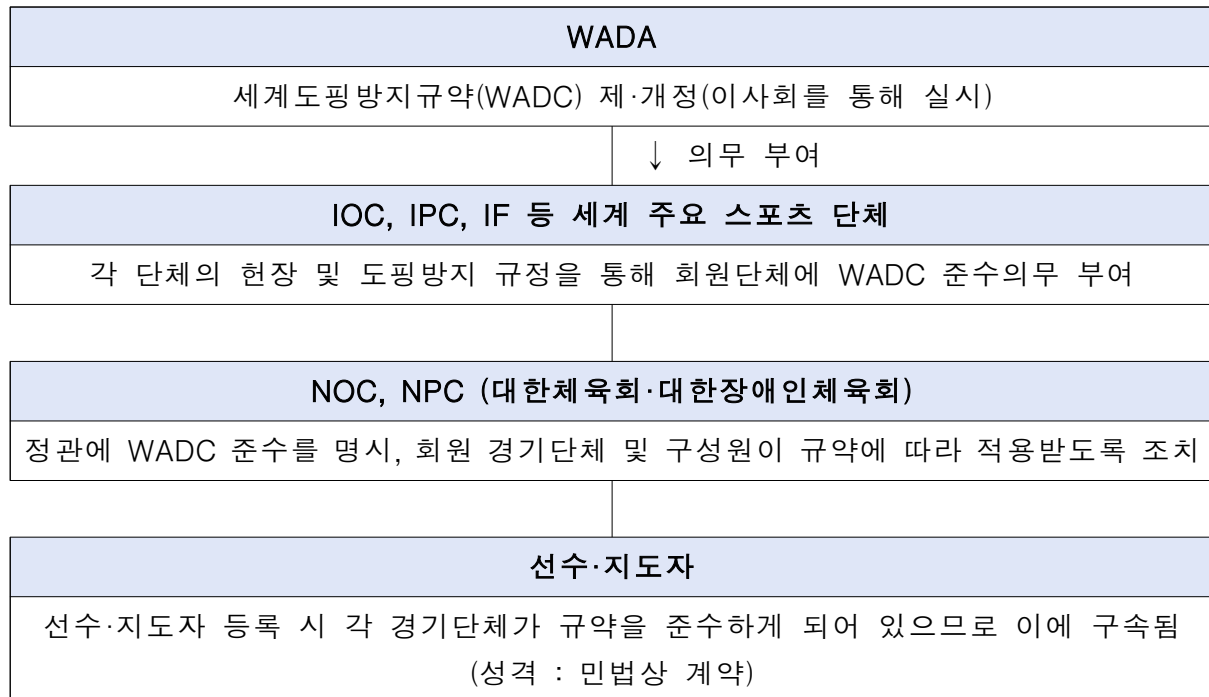
문 의 처
02)6788-5375

8) 1) WADA규약에서는 오인·혼동 등 도핑행위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2) 전문선수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WADA규약과는 달리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단체 등록선수’에 해당하는 ‘일반 생활체육 동호인’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음

[참고자료1] 도핑방지 규정 관련 체계 (자료: 문체부)

□ 도핑 방지 규정 자율 규약 적용 체계

- 현 도핑방지 규정의 적용 원리는 WADA에 IOC 등의 국제스포츠기구와 국제스포츠기구에 소속된 NOC 등이 자발적으로 가맹하여 작동하는 체계로서 일종의 자율규약 체제로 볼 수 있음.



[참고자료2] 도핑 행위 및 제재 현황 (자료: 문체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소관의 경륜·경정 선수 건 제외

□ 연도별 도핑 행위 적발 현황

(단위: 건)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도핑 행위 적발 건수	27	23	18	25	21	20

□ 제재 및 항소위원회 운영 실적

구분	제재			항소		계 (B)+(C)
	청문없는 결정 ¹⁾	제재위원회 결정 ²⁾ (A)	합계 (B)	항소위원회 결정 ³⁾ (C)	항소율 (A)/(C)	
'19년	8건	19건	27건	8건	42%	35건
'20년	10건	13건	23건	5건	38%	28건
'21년	6건	12건	18건	8건	66%	26건
'22년	15건	10건	25건	5건	50%	30건
'23년	15건	6건	21건	4건	66%	25건
'24년	10건	10건	20건	5건	50%	25건

주1) 청문없는 결정: 선수가 청문을 포기하는 경우 청문 없이 KADA가 제재 결정

2) 제재위원회* 결정: 선수가 청문 개최를 요청할 시 제재위원회 심의 및 결정

* 법률, 의학, 약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3) 항소위원회* 결정: 이미 부과된 제재 결정에 대하여 선수가 불복하는 경우 위원회로부터 독립된 한국도핑방지 항소위원회*가 제재 결정

* 「2021 WADA규약」 개정에 따라 도핑방지기구와 항소위원회 독립 운영이 요구되어 '21년부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운영 중

[참고자료3] 도핑방지 및 처벌 관련 해외 입법례

□ 해외 입법례

국가명	내용
독일, 「도핑방지법」	○ 징역 3년 또는 벌금형 - 제조, 거래, 판매, 분배, 처방 - 타인에게 금지약물의 투여, 금지방법의 사용 - 본인이 금지약물의 투여, 금지방법의 사용 - 도핑을 하고 스포츠경기에 참가하는 자 ○ 징역 2년 또는 벌금형 - 약물을 구입하거나 소유한 자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 도핑으로 다수의 건강을 해친 자 - 도핑으로 타인을 사망 위험이나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킨 자 - 도핑으로 금전상 이득을 취한 자 -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약물을 팔거나 제공한 자/처방한 자, 약물을 투여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한 자
미국,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관리법」	○ <u>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마약류로 인식, 마약류 관리기준에 따라 처벌</u> ○ 단순 소지 - (1차)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이상 벌금 - (2차) 15일에서 최대 2년 징역 또는 \$2,500 이상 벌금 - (3차) 90일에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이상 벌금 ○ 밀매 - (1차) 최대 15년 징역 또는 \$500,000(개인) / \$2,500,000(개인외) - (2차) 최대 30년 징역 또는 \$1,000,000(개인) / \$5,000,000(개인외) ○ 위장표기 - 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00 이하 벌금
미국, 「로드첸코프 반도핑법」	○ 대상 : 미국 관련 국제경기대회에서 도핑과 관련된 행위에 가담하고, 금전적 손해를 끼친 자(선수 이외의 자가 고의로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용하여 대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계획을 실행·실행 시도·공모) ○ 위반시 : (벌금형) \$1,000,000 / (징역) 10년 이하 / (비고) 재산몰수 ○ 입법배경 : <u>2028LA 올림픽에 러시아 등의 반도핑 위반을 조직적으로 한 러시아·중국 등의 주요 국가에게 도핑검사를 강제하고(검사가 직접 검사) 위반 시 형법상 ‘사기행위’로 보고 강력한 처벌을 명시하기 위함.</u>
일본	반도핑 활동에 관련된 법률은 있으나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